과총 선거관리 규정

제 3 장 선거관리 <신설 2018.2.7.>

제12조(선거관리) ① 회장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이하 '선거'라 한다.) 이의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장에서 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회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같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은 과총 처무규정상 임원 선출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14조(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일은 회장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회의 개최일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후보를 확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인 확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후보를 확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 날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을 확정하여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1.27.>

② 선거인명부에는 소속, 성명, 전자메일을 표기한다. <개정 2018.11.27.>

제16조(선거 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의 기호, 성명, 경력, 정견, 연령, 사진 및 자기소개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회장후보는 선거 공보에 필요한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회장후보의 공보는 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금지되는 선거운동) 회장후보 및 후보지지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2.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3.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4.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8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은 회장후보 및 후보 지지자가 제17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 및 후보 지지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장후보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제4조와 제9조는 2014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을 선출할 때부터 적용하며, 2011년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의 선출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1년 임기가 시작되는 부회장은 2010년 선출된 차기회장이 10인 이내의 부회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는 이를 심의하여 부회장을 선출한다.

③ 2018년 임기가 시작되는 감사의 선출은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감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후보자 2인을 총회에 추천하여 선출한다.